

압류재산(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등·선박) 인도 명령서

채납자 (점유자)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영업소)			
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				
인도기한		년 월 일 까지		
인도장소				
인도를 명하는 이유		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		

위 재산은 지방세 채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인